

[일련번호 : 10]

# 양 천 구

## 시 정 요 구

**제 목**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 1. 업무개요

○○과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은 사용 시 1일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연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 A 외 1명은 동일한 일자에 연가 또는 병가의 사용으로 1일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임에도 2시간의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고 연

가로 처리하지 않았으며, A는 1일 2시간 사용이 가능한 육아시간을 같은 날 2시간 씩 2회 사용하여 규정에 맞지 않게 육아시간을 사용하였다.

[표] 특별휴가 부적정 사용 내역

연번	부서	이름	위반일자	휴가 사용내용	위반내용
1	○○과	A		- 09:00~11:00(2시간) 육아시간 - 14:00~18:00(4시간) 연가	1일 근무시간 4시간 미만
				- 09:00~11:00, 16:00~18:00 (총 4시간) 육아시간 - 14:00~16:00(2시간) 연가	육아시간 2시간 초과 사용, 1일 근무시간 4시간 미만
				- 09:00~11:00(2시간) 육아시간 - 11:00~15:00(3시간) 연가	1일 근무시간 4시간 미만
				- 09:00~11:00(2시간) 육아시간 - 13:20~16:20(3시간) 연가	1일 근무시간 4시간 미만
2	○○과	B		- 09:00~11:00(2시간) 모성보호 시간 - 11:00~18:00(6시간) 병가	1일 근무시간 4시간 미만

####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육아시간 관련한 규정 숙지에 미흡하였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특별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5. 조치할 사항

##### ○○과장은

A의 경우 2022년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2시간을 연가일수(사용가능한 연가저축일수)에서 차감하고, 2023년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총 8시간(1일)은 2023년 연가보상비 (1일 기준액) 89,870원을 환수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연가일수에서 1일 차감)를 하시기 바랍니다.

B의 경우 2023년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2시간을 연가일수(사용가능한 연가저축일수)에서 차감하고, 향후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